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6. 4.

발 의 자 : 정해원 위원 외 1

1. 개정이유

공직선거법 개정(2005.8.4 법률제7681호)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(2005.12.29 서울특별시조례제4339호)으로 마포구의회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함.(안 제2조)

1. 운영위원회 - 7명
2. 행정건설위원회 - 8명
3. 복지도시위원회 - 9명

3. 개정근거

○ 공직선거법(2005.8.4 법률제7681호)제23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9명”을 “7명”으로, 동조제2호중 “11명”을 “8명”으로, 동조제3호중 “12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</u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운영위원회 - <u>9명</u> 2. 행정건설위원회 - <u>11명</u> 3. 복지도시위원회 - <u>12명</u> 4. (생략)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</p> <p>1. 운영위원회 - <u>7명</u> 2. 행정건설위원회 - <u>8명</u> 3. 복지도시위원회 - <u>9명</u> 4. (현행과 같음)</p>